대구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

(정천락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 5817 발의년월일 : 2020. 9. 25 발 의 자 : 정천락 의원

> 김성태 의원 김지만 의원 배지숙 의원 의원 이만규복 의원 이태손 의원 항병문 의원 황순자

1. 제안 이유

○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독도 관련 역사와 영토 왜곡 교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내 학생과 교직원들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역사관 확립, 독도 영토주권 의식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- 가.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나.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4조)
- 다.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라. 독도교육주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
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 광역시 내 학생 및 교직원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독도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독도교육"이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사인식 확립, 영토 주권의식 제고 및 인식확산 등에 대한 교육활동을 말한다.
- 제3조(책무) 대구광역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- 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 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추진 목표 및 방향
 - 2.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
 - 3.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 - 4.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5조(실태조사)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

하여 독도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- 제6조(사업추진)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독도 탐방 등 현장교육사업
 - 2. 독도교육 학습자료의 개발 및 보급사업
 - 3. 독도 관련 토론회, 전시회 등 연구사업
 - 4. 학생 체험활동 지원 및 교직원 연수사업
 - 5.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**제7조(독도교육주간)**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독도교육주간 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도 관련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- 제8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 및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, 대구광역시, 다른 지방자치단체,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- 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붙임〉

관계법령

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

제20조(관장사무) 교육감은 교육·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

- 1.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
- 2.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
- 3.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
- 4.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
- 5. 학교,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 ·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
- 6.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7. 과학 · 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
- 8. 평생교육, 그 밖의 교육·학예진흥에 관한 사항
- 9. 학교체육 · 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
- 10.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
- 11. 교육・학예의 시설・설비 및 교구(敎具)에 관한 사항
- 12.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
- 13. 특별부과금 · 사용료 · 수수료 · 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
- 14. 기채(起債)・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
- 15. 기금의 설치 · 운용에 관한 사항
- 16.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
- 17. 그 밖에 당해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